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대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강대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병도, 김화숙, 이태성, 경만선,
최기찬, 김제리, 김기덕, 이영실,
김정태, 노식래 의원(이상 10명)

1. 제안이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, 기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히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힘.(안 제35조제4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 이상. 단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.5배 이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(棟)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 이상. 단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.5배 이상</p>	<p>제35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단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.5배 이상</p>